

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·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신축, 변경, 멸실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, 변경,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11. 12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-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30 외 7건

(도로명주소 부여 3건, 변경 1건, 폐지 4건)

| 연번 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고시일 | 도로명 부여사유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- 붙임 조서 참조 - | | | | |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지적과(☎330-107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사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